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27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건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2214229	조인철의원	2025. 11. 13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2.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3.10.) 상정 및 축조심사
	2216249	권향엽의원	2026. 1. 22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2.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3.10.) 상정 및 축조심사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3. 11.)
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건의 법률안을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
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
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이 저하되
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기관
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선임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제도의 당초 취지
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안 제12조제5항 및 제7항).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 ⑤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제2항
에 따른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
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
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
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선임 절차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선임 절차에 착수한 경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 ④ (생략)</p> <p>⑤ <u>이사장은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여야 한다.</u></p> <p>⑥ (생략)</p> <p>⑦ <u>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u></p> <p>⑥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u></p>

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 2.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예산을 감독할 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③ · ④ (현행과 같음)